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회는 "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동문회"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회는 동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 육성발전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3조 (회원 자격) ① 본 회 회원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(학칙변경에 따른 환경도시공학부 건축학전공, 건축학부 포함)를 졸업하고 본회에 활동의지를 가진 자로 한다.

제4조 (회원의 의무) 본 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- 가. 동문회비 납부(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)
- 나. 본 회 정관 및 각종 결정사항 준수

제5조 (회원의 권리 및 자격제한)

- ① 본 회의 참정권, 선거건,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②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본 회의 참정권만 갖는다. 단, 전 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동문회비 자동이체 약정서를 작성한 즉시 선거건,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6조 (징계 또는 제명)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
- 1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
- 2.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
- 3. 본 회의 각종 활동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
- 4. 본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
- ②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하는 경우 총회에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동문회장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징계 또는 제명이 결정되면 동문회장은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.

제3장 임원

제7조 (임원의 수) 임원의 수는 15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며, 인원은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3명 이내
- 3. 이사 9명 이내
- 4. 감사 1~2명

제8조 (임원의 선출) ① 임원의 자격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.

- ② 회장 1명과 과 감사 1명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제9조 (임원의 직무)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한다.

- 1.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이사 : 회장을 보좌하며,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분야별 직무를 수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.
- 4. 감사 : 감사는 본 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.
 - 가. 년 1회 이상 본 회 모든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
 - 나. 총회에서 감사결과 보고
 - 다. 회장에게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
 - 라. 감사에 필요한 임원 면담 요구
 - 마. 감사에 필요한 서류 열람 요청

제10조 (임원 임기) 본 회 임원의 **임기는 1년**으로 하고, 1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 (임원회의 업무) 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- 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2. 예산,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4.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
- 5. 재정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 (임원의 대우)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.

제13조 (임원의 해촉) 회장은 임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할 경우 해촉하고 새로운 임

원을 임명할 수 있다.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사업

제14조 (사업)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1. 주 사업
 - 가.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
 - 나. 장학 사업
 - 다. 지역사회 자원봉사
 - 라. 재학생 멘토링
 - 마. 모교 행사 지원(홈커밍데이, 동문의 밤, 학술제 등)
 - 바. 동문회 활성과 발전을 위한 동문회 임원진 워크샵 개최, 동문회 회보 및 주소록 발간
 - 사. 신입회원의 취업
- 2. 부 사업
 - 가. 주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봉사, 교육, 상담, 문화 활동
 - 나. 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활동
 - 다. 주 사업 대상 및 내용 발굴 활동
 - 라. 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한 기술, 교양, 인성교육 활동
 - 마. 주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연구 활동
- 3. 기타 임원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업
- ② 위 사업 중 동문과 재학생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해당 단체의 고유성을 보장하여 동문회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며, 그와 동일한 사업은 동문회가 시행하지 않으며, 해당단체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한다.

제5장 총회

제15조 (정족수)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도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.

제16조 (지위 및 구성) 총회는 본 회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 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7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정관 제정 및 개정 의결
- 2. 회장,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의결
- 3. 회비의 부과징수 의결
- 4. 사업실적 및 예산 의결
- 5. 각종위원회 설치 의결
- 6. 그 밖의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18조 (회의의 소집) 회장은 다음과 같이 총회를 소집한다.

- 1.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와 제적회원 1/3이상에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명의로 1달 이내 소집한다.
- 2.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제19조 (총회 의장) 총회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, 회장은 의결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 당일 의장을 임명하거나 추천 받아 결정할 수 있다.

제20조 (총회의 의사록) ① 이사 중 1인은 총회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회의 내용과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임원들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의사록은 녹취록으로 대신 할 수 있다.

제6장 재정

제21조 (회비) 본 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입회비 : 10,000원/졸업시 납부
- 2. 연회비 : 50,000원
- 3. 임원회비 : 회장 100만원, 부회장 50만원, 이사 및 감사 20만원이며, 임원회비 납부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.
- 4. 동문회비는 월납 또는 일시불로 납부 할수 있다.
- 5. 동문회비는 동문회 운영비, 학교 발전기금 및 재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처야 한다.

제22조 (경비와 유지방법) ① 본 회의에 운영경비는 회원 입회비와 회비를 기본자산으로 하며 기타 찬조금과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재정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정으로 한다.

② 가입비 및 회비는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
제23조 (회계연도) ① 본 회의 회계 연도는 7월-6월로 한다.

② 결산은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.

제7장 행정 및 회계 서류

제24조 (행정 및 회계 서류) 본회의 활동에 작성한 일반 행정 및 회계 서류는 차기 회장에게 모두 이관되어야 하며 차기회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5조 (인수인계서류) 본회의 운영한 일반 행정 및 회계 서류는 차기 회장에게 모두 인수인계 하여야한다.

제 10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26조 (정관 변경) 본 회의 회칙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7조 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구성원 3/4이상의 요구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
제11장 보 칙

제28조 (준용 법규) 본 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법규 를 준용한다.

제29조 (운영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- 1. 본 회의 회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2.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3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

작성일 : 2016년 6월 22일 작성자 : 이사 정동훈 (96)

인 증: 회장 조원규 (1기 회장: 87)